

##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
나. 개정사유

-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등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"군보 또는 게시판"을 "군보"로 개정 (안 제4조의 2 제3항)
- "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"를 "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"로 개정 (안 제1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### 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### 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8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사유

수입증지 판매수수료등을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

### 2. 주요골자

- "군보 또는 게시판"을 "군보"로 개정 (안 제4조의 2 제3항)
- "액면가액의 100분의 5"를 "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"로 개정. (안 제19조)

##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2 제3항중 "군보 또는 게시판"을 "군보"로 한다.

제19조중 "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"를 "액면 가액의 100분의 3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 2 (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계기사용상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<u>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 한다.</u></p> <p>제19조 (판매인 수수료)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<u>액면가액의 100분의 5</u>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. 다만,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4조의 2 (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<u>사용</u>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군보</u> - - - - -</p> <p>제19조 (판매인 수수료) - - - - - - - - - - <u>액면가액의 100분의 3</u>으로 -</p>